

#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공시사항

## 1. 기본사항

제정일	개정시행일	판매종료여부(종료일)	기존고객적용여부
	2021.03.25	○ (22.01.01)	○

## 2. 개정대비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2			

## 3. 담당부서명 : 여신심사관리부



심의 번호 : 2021PO02 (유효기간: 2021.3.25.-2022.3.25.)

##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돋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 1 상품 개요 및 상품의 특성

상품명 :

대출신청금액 : 원

적용예정금리(보증료율) :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대상  비대상

통일 대출 상환 대상여부 :  대상  비대상

금리적용방식 :  변동  고정  혼합

대출기간 : 취급 후 개월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여부 :  대상  비대상

총 원리금·수수료 부당 예상액 : 원

대출금액을 상환 스케줄에 따라 정상 상환한 경우 금액으로, 금리변동 중 상환한 도시를 기준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대출 이자율

- 고정금리 : 여신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다만, 여신실행일 현재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혼합금리 : 여신실행시부터 고정금리 약정기간 동안에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약정기간 경과 후 대출 잔여기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등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되어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 변동금리 예시

\* CD연동금리 : 3개월마다 시중의 CD유통수익률(91일율)에 신규시 결정된 가산이율을 더하여 변경됩니다.

\* 금융채연동금리 :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에프엔자산평가가 고시하는 「재산정주기 해당 기간의 AAA등급 금융채유동 수익률」 종가(4사평균)의 단순평균값(6개월, 1년, 2년, 3년, 5년)을 적용합니다.

\* COFIX연동금리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직전일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 또는 잔액기준 COFIX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매 6/12개월마다 변경됩니다.

원가요소와 마진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4 수수료 등 비용

※상품에 해당되는 수수료 등 비용의 경우, 차트보드에 표시됩니다.

증료 : ( ) 원 또는 대출금액의 ( ) %

저도소통수수료 : 저도소통대출금액의 ( ) % ×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취급일로부터 ( ) 년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기준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은행과 시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 경과하여 해지할 경우에는는 저도소통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예시) 3년 만기 주택보대출 1억원을 만기 1년전 상환할 경우,  
(수수료율 1.5% 가정)

= 1억원 × 1.5% × 365(윤년:366일)/1095(윤년1,096일)=500,000원(윤년 500,912원)

저당권설정비용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 ) 원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 ) 원

말소(감액)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합니다.

•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 ( ) 원

고객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합니다.

• 기타 비용으로서 부당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 ) 원

고객과 은행이 균분하여 부당합니다.

타수수료

• 항목( ) 금액( ) %, 원

인지세 : ( ) 원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당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대출금액	인지세액
------	------	------	------

■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담보신탁수수료 :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신탁보수는 (은행)이 부당하며, 신탁회사로의 등기이전 관련 비용은 (은행)이 부당합니다.

▣ 기타비용 : 항목( ) 금액( ), 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은행이 부당한 근저당권설정비용과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보증료 또는 보험료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반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당한 한도약정수수료,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등을 은행이 반환합니다.

## 5 실질유효금리

▪ 대출이자와 대출취급시 은행이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 등 비용을 합산하여 대출금리(연율)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수수료 등 비용 종별에 의하여 고객이 부당하는 비용(인지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 중도상환수수료, 기타 실비성격의 일부 수수료는 실질유효금리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상 실질유효금리 계산에 합산된 내역

▪ 적용예정금리 : (%)

▣ 기타(구체적으로 열거)

(%) : (%), 원

(%) : (%), 원

## 6 이자 납입방법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

▪ '매일의 잔액'의 의미 = 마감잔액 + (하루 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

▪ 개시잔액과 마감잔액은 매일의 잔액을 산정하기 위해 은행이 정한 시작 및 마감 시간의 대출잔액을 말함

▪ 기타 이자납입방법은 대출거래약정서 참조

## 7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이자율 : 연 3%

또는

-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 : 연 (%)%

-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 연 (%)%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 연 (%)%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로 합니다.

\* 연체기간, 율은 은행기준에 따라 수정요망

▪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예시) 주택담보대출(원금 1억2천만원, 약정이자율 연5%)의 월납이자(50만원)를 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하고, 연체발생후 3개월 시점에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

연체기간	계산방법	연체이자
연체발생~1개월 분	지체된 약정이자(50만원) × 연11%(5%+6%) × 1/12	4,583원
연체1~2개월분	지체된 약정이자(100만원) × 연12%(5%+7%) × 1/12	10,000원
연체2~3개월분	원금(1억2천만원) × 연12%(5%+7%) × 1/12	1,200,000원
계		1,214,583원

\* 기한이익상실전 발생한 약정이자는 별도

※ 위 내용은 이해를 돋기위해 연체이자만을 월 단위로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입니다. 연체이자는 대출조건, 이자일수계산, 대출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납부금액은 연체이자에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분활상환금 및 기한이익상실전 발생한 약정이자는 별도

※ 위 내용은 이해를 돋기위해 연체이자만을 월단위로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입니다. 연체이자는 대출조건, 이자일수계산, 대출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납부금액은 연체이자에 약정이자 및 분활상환금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지 않고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 유의사항

▪ 대출 계약시 신용점수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의 제한

▪ 당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LTV 및 DTI허용한도 내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내 이익이라고 합니다.

###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당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당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 (가)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 은행으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고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지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 은행의 서면청구에 의해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조회 및 연체정보 등록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조회

다음의 신용정보들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 집중, 활용됩니다.

①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

② '연체' 등 정보: 대출금 등의 연체사실

③ 신용거래정보: 대출현황, 보증현황 등

- 연체 등 정보 등록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합니다.

①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연체 등' 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 : 5/10

○ 연체발생일 : 5/11

○ 등록시유발생일 : 8/11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됩니다

'연체 등' 정보 거래처로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둘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 계약서류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 위법 습니다.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은행은 대출계약 철회権에 따라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제외대상 대출범위

-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등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행사대상 대출에 포함)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権 제한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를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1회를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

(변경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

☞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의 경우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재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변경 접수 및 신청 이후 은행이 정한 일정 기간 내에 미납된 이자 및 원금에 대해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증가, 연체정보 등록, 신용평점의 하락 등 차주의 신용위험이

증대되거나 기타대출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한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공무원대출 등 기타 협약대출 등)의 경우 같은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은행·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상계란 채무자와 은행이 서로에 대해 금전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은행은 대출 등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채무자의 대출 등 그 채무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을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도래 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은행에 대한 대출 등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상계한 예금 등의 통장을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자체 없이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대출계약 등 약정내용에 따라 채무자가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등)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채무조정요청권

• 채무자는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곤란한 경우,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채무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상환능력 심사결과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대해 채무자에게 곧 통보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상환방식별 원리금 상환 위험

• 거치식대출의 거치기간 종료시 상환부담 :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만기일시상환 대출 만기도록시 상환부담 :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록시 한꺼번에 원(원리금 기준)을 상환해야 하며,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고객이 가치식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상환방식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거치기간 종료 후 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
거치식 분할상환	원	원
즉시 분할상환*	원	원

\* 즉시 분할상환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대출 만기를 가정

고객이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한 경우

상환방식	총 원리금 부담	만기시 상환 예상액
------	----------	------------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주식회사 중국공상은행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강화된 설명의무 이행 대상으로서 은행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 들었으며,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은행직원으로부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고객확인 : 20 . . . (서명/인)

	예상액	
만기일시상환	원	원
즉시 분활상환*	원	원

\* 즉시 분활상환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대출 만기를 가정

※ 상기 정보는 거치식 분활상환(거치기간 1년 초과) 또는 만기일시상환(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 포함) 대출 이용고객에게 제공되

는 정보이며, 상환액은 이자율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이자, 지연배상금 및 비용(약정이자, 종도상환수수료, 부대비용 등)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신청금액, 신용도,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